



명쾌한 수다

임시총회 소집을 목적으로 조합에게 조합원 명단 공개를 요청 했으나 거절당하자, 보관 중이던 명단을 제공받은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일까?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과 B는 2019. 8. 19.부터 8. 27. 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82명으로부터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 소집요구서에는 피고인과 B를 요구자 대표로 선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B는 2019. 8. 16. 이 사건 조합에 임시총회 개최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9. 8. 27. 목적을 상세하게 기술되어 다시 청구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B는 2019. 8. 30. 이 사건 조합에도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조합원의 주소, 전화번호가 수록된 조합원 명부의 복사를 요청하면서, 목적을 ‘이 사건 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각 조합원에게 등기로 발송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2019. 9. 9. B가 소집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단의 복사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조합원인 A는 2018. 5. 24. DL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8. 2. 1. 개최된 주민총회

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제공받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름, 주소가 포함된 718명의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B가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 명단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2019. 8. 말경부터 2019. 9. 초 순경 사이에 A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조합원 명단을 이용하여 “2019. 9. 4.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임시총회를 2019. 10. 4. 개최하고 그 소집을 통지한다.” 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냈고, 2019. 9. 6.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2019. 10. 4.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임원들과 임원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조합원들에게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합원의 이름, 주소가 포함된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A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것일까요?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88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대법원의 판단을 함께 알아봅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

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임원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제3자(조합원)로부터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해임 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임시총회 소집을 목적으로 조합에게 조합원 명단 공개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민총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명단을 제공받은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